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8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조계원 · 최혁진
박지원 · 양부남 · 소병훈
정준호 · 박민규 · 진선미
이주희 · 김문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에만 재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재외국민은 내 삶의 뿌리가 닿아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 재·보궐 선거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해 왔습니다.

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재외국민과 고국의 연결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시점에서, 단순히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참정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

이에 재외선거 실시의 범위를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통령선거 · 국회의원선거 ·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.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폭

넓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(안 제218조제1항 등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제2호 후단 중 “30일”을 “50일”로 한다.

제218조제1항 본문 중 “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”를 “선거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선거 또는 재선거”를 “선거·재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폐지·분할·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”로 한다.

제2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지역구국회의원선거”를 “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”로, “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”를 “선거”로 한다.

제218조의12의 제목 중 “재선거”를 “재선거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선거 또는 재선거”를 “선거·재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폐지·분할·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”로 한다.

제218조의16제2항 중 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”을 “보궐선거등은”으로 한다.

제218조의19제3항 중 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”를 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”로 한다.

제218조의20제2항 중 “국회의원선거”를 “국회의원선거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”로 한다.

제218조의24제2항 중 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”을 “보궐선거등은”으로 한다.

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“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”는 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”로, “거소투표자”를 ““거소투표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”를 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보궐선거 등의 선거일) ① (생략)	제35조(보궐선거 등의 선거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궐선거·재선거·중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폐지·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폐지·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(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)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.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<u>30일까지</u>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~~50일~~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18조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	제218조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

치·운영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「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」 제2조에 따른 공관(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,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“공관”이라 한다)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의 궐위(闕位)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~ ⑩ (생략)

치 · 운영) ① -----
-----선거-----

-----선거 · 재선
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
· 폐지 · 분할 · 합병에 따른 지
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-----

②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

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(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·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(이하 이 장에서 “국외부재자 신고기간”이라 한다) 서면·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·시·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제218조의12(대통령의 궐위선거
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

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 ①

-----지역구국회의원선
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
치단체의 장의 선거-----

-선거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18조의12(대통령의 궐위선거
및 재선거 등에서 기한 등의

축) 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 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<u>선거 또는 재선거</u>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. 1. 2. (생략) 제218조의16(재외선거의 투표방법) ① (생략)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(<u>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</u>는 오후 8시를 말한다)까지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. ③ · ④ (생략) 제218조의19(재외선거의 투표절차) ① · ② (생략) ③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	단축) ----- ----- -----<u>선거</u>·<u>재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폐지·분할·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16(재외선거의 투표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보궐선거등은</u>----- ----- -----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19(재외선거의 투표절차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--	---

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(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)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18조의20(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) ① (생략)

②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(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)가,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「정치자금법」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.

----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18조의20(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국회의원선거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-----

-----.

③ ~ ⑥ (생략) 제218조의24(재외투표의 개표) ① (생략)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(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.	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24(재외투표의 개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보궐선거등은</u>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략) 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(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·제10호는 제외한다)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전투표 및 거소투표”는 “재외투표”로, “<u>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</u>”는 “<u>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</u>”로, “<u>거소투표자</u> 또는 <u>선상투표자</u>”는 “재외선거인등이”로, “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”는 “재외투표”로 본다. ② 제218조의18제4항 후단의	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218조의25(재외투표의 효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“<u>거소투표자</u>”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

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(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)로 적거나 <u>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</u>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(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)는 무효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. 1. 2. (생략)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